
입 법 정 보

2019-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
3.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4.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6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7
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8
8.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9.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9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0
1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3
1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4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1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5
1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6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6
21.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7
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촌진흥청).....	17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20
2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1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2
2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3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3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4
3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4

33.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4
34.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5
3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7
3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7.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9
3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9
3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0
40.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41.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2
4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정부입법 예고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 1)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 1)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기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3.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 1)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나.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평가 대행 전담기관 기준(안 제10조의2)
 - 1)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 다.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 1)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선등록상표권자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와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추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4.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1)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1)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1) 상표전문기관의 ‘지정’ 제가 ‘등록’ 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준으로 변경함.

라. 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1)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마. 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1) 상표건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건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종전에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5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고확인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출판사 폐업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1) 출판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2. 25.
- 마감일자 : 2019. 4. 8.

-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4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쇄사 폐업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1) 인쇄사 폐업 시 기존에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쇄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고필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2. 26.
- 마감일자 : 2019. 4. 8.
- 어구 과다사용, 조업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으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점차 줄어드나,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사법 행정 제재보다 월등해 근절이 되지 않는 상황, 이에 지속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혼획 관리 규정의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행정처분 사후 관리 강화로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임.

8.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26.
- 마감일자 : 2019. 4. 8.
- 특허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에 추가 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 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함

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 필요

○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 1)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의 공익성심사 사유 발생신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 2)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18조제11항 신설)
- 3)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 4) 부가통신사업의 변경신고(안 제23조제2항 신설)
- 5)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 6) 부가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 신고(안 제26조제3항 신설)
- 7)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안 제62조제3항 신설)
-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 1)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8.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제4항 신설)
- 1)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
 - 2)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법·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질인증기관 중요 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제도 합리화 도모
- 나.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 제2항, 제3항 신설)
-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9.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혈액원을 추가하여, 혈액제제 GMP 시행에 따른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8.

○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반복적 법령 질의가 발생하였던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대상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제5조제1항, 별표 1)

1)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서 소매업 분석대상을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확대하고,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 개선(제4조의2)

1)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함.

다.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의 관리 절차 정비(제5조, 제6조의2)

1)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 관리대장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부기·관리하

고, 해당 준대규모점포가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변경 예고 절차 신설 등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 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면적 등 개설계획을 영업 개시 전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여야 하나, 게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예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예고 절차를 신설함.

마.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제5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1)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사항,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주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행 규제 중 3건에 대해 일몰을 해제하고 2건에 대해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사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항에 건축물 건축·용도 변경 허가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 조치함.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8.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취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 1) 전승활동 중에 취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 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1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8.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 1)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8.
-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하여금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권한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집중되어 있고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촉진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왔음. 또한, 개별사업의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용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1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18.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1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27. • 마감일자 : 2019. 4. 17.
-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2. 28. • 마감일자 : 2019. 4. 9.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 시행 (' 19.7.1.)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18.11.)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주민등록법 제3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일몰 해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민등록상 거짓의 사실신고(소위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제3자 신규 전입신고사실 통보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
 - 1)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
 - 1) 제36조의2 각호 사항인 제35조제1호(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 는 비규제에 해당, 제40조(과태료)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 해제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
- 다. 제3자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 통보 근거 마련
- 1)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임대인 등에게 신규 전입신고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위임규정 정비
- 1) 주민등록 신고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의 위임근거 마련을 위해 법 제11조3항 개정,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신설

21.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2. 28.
 - 마감일자 : 2019. 4. 9.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및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 1)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 2)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의2제11호)

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9. 2. 28.
 - 마감일자 : 2019. 4. 9.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

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식품 분야 연구기관)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 ~ 제6조)

-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건 등
-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라.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마.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 제9조)

- 1) 시·군 의견수렴,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2) 연도별 목표 달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바.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 ~ 제11조)

-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등(안 제14조)

- 1) 협회의 회원 자격, 지역협회 설치 등
-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아.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 1) 이의신청 절차,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 1) 실태조사의 협회 위탁,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등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28.
- 마감일자 : 2019. 4. 9.
-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불이행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넓히는 등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을 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함께 제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① 해당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계획의 부합여부와 사업시행 지침 및 절차 등의 준수 여부 ②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한, 재원확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라. 토지수용재결신청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현황 등을 기재·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2항제5호 각 신설)
 -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결신청 내용을 열람·공고하지 못하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을 명시(안 제15조제2항 개정)
 - 바. 토지보상금 중 채권 지급 대상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과 토지의 손실보상시 적용하는 ‘지가 변동률’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법률 명칭 반영(안 제27조의2 제1항 개정, 안 제37조 제1항 개정)

대한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해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 규정 신설
- 나. 중앙행정기관 선정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 근거 마련 및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규정을 품위 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선정 취소 및 1년 범위 내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처분 함으로써 처분 완화, 품위유지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선정취소·자격정지 세부기준 마련 등 규정 정비
- 라.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선정 노력 규정 신설
- 마.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규정 신설

2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은 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안 제3조제5항제8호)
 - 1)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

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법인묘지 등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별표 6)
 - 1)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징금 기준의 등급별 연간매출액과 1일 과징금을 조정함.

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마.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바.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2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14조의4)
 - 1)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나.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수준 달성에 따른 출연금 감면 (안 제19조의16)
 - 1)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도록 함.
 - 2)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하며, 이를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 18.12.31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시기를 정하는 부칙에서 일부 사례를 누락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3. 5. • 마감일자 : 2019. 4. 15.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 신설 및 반도체설계기사 등 4종목을 폐지 및 기계설계분야 유사종목을 통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조정하며, 검정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3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6. • 마감일자 : 2019. 4. 15.
-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33.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3. 6. • 마감일자 : 2019. 4. 15.
- 현행법령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제1급 또는 제2급, 혹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으로 규정되어있는 자녀 부모 중 장애 부모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 부모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 또한 아이 양육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신청 가정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 면 동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

34.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3. 6. • 마감일자 : 2019. 4. 15.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의 범위를 재산상의 손실에서 생명 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개정법’ 이라 함)이 ’ 19. 6. 25.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 시행령에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급 통제·관리 방안 등을 담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명 신체상 손실의 보상범위 및 기준 신설 (안 제9조제3항, 별표1)
 - 1) 자발적 협조자 등에 대한 비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타 부처 입법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를 참고하여 생명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 2) 별표 1 부상등급의 기준 중 제1-8등급까지만 의사상자법을 준용하고, 제8등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의사자보상금의 5/10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나. 손실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1)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
-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 1)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
- 라. 보상금 추가 신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1)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개정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상 또는 신체상의 손실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된 경우, 이미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
- 마. 경찰위원회에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1) 보상금 지급 시 경찰위원회에 심의자료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 2제5항과 관련,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 바. 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제6항과 관련,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환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신설
- 사.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조제목 변경 (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
- 1) 개정법이 범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1조의3 제목을 ‘보상금 지급’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의 제목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괄 개정

아.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환수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 1)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 관련,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7.

• 마감일자 : 2019. 4. 17.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 1)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 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 1)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 1)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라. 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 1)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

3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3. 7.
- 마감일자 : 2019. 4. 17.
-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영 제13조, 별표 2)
 - 1)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 나.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 1)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 ~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영 제33조, 별표 3의3)
 - 1)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 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64조의4)
 - 1)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37.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악취방지법이 개정(· 18. 06. 12., 시행 ·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 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고,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 3)
 - 나.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 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9조제4항)
 - 다. 개선명령 행정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7조제2항 신설)
 - 1) 개선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1)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안 제28조)

1)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3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특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7호, '19.1.8 공포, ' 19.7.9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타 업종의 기업과 같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할 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함.
-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 특례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제9조의8 신설)

- 1)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함.

다.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제2호 삭제)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반면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견기업의 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신설)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견기업 주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제14조의2 신설)

- 1) 중견기업 주간을 매년 11월 셋째주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국민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역할 등에 대한 홍보,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등을 동 주간에 실시할

제공한 자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4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제16120호, '18.12.31. 공포, '19.7.1. 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판매 구매 정보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의3제1항 개정)
 - 1)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등 상위 법에서 명시한 정보 삭제
 -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정보를 추가하여 농약 판매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 3)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유도
 - 4)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도 의무기록 대상에 포함
 -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24조의3제2항 개정, 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 1) 농약등의 판매기록 이력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관리하는 판매정보의 범위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 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및 제한처분 대상 농약의 판매정보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함
 - 3) 판매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으로의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의 농약등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안 제24조의3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 1) 농약등의 판매 구매 정보 기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 판매업자가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3) 상위 법에서 삭제된 기록 보존 기한을 현행과 같이 3년으로 정하고, 판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판매정보의 기록 및 보존 서식을 간소화
- 4) 농약등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24조의4 신설)

-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에 법을 위반한 농약업자의 정보 관리, 연계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추가
- 2) 농촌진흥청장이 농약등의 분류, 바코드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시스템 운영 보고 의무 부여 등

마.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규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10호 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 1) 수출입식품방제업자가 위해성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위해방지를 조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2)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을 현행 200~500ml에서 모두 200ml로 완화하고,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은 현행 100ml에서

50ml로 완화

- 3)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방문 신청시 현행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약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
- 4)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매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검사성적서 서식 개선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기존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등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 제3

조 삭제)

-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며, 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 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4조제3호 및 제4호,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3의3호,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함)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7.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 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삭제)
 -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정)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3. 8.
- 마감일자 : 2019. 4. 19.
-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 나. 원장명, 설립·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3’)
 - 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 마.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